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2011.12.2공포)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2012.03.15)에 맞추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함.

(표준안에 따라 개정)

##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24조 제1호의 표)

- 1000cc이하 1cc당 80원
- 1600cc이하 1cc당 140원
- 1600cc초과 1cc당 200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2. 4. 2 ~ 4. 22) 결과 : 의견제출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군세조례”를 “평창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세액 상당 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평창군 군세조례</u></p> <p>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영업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시시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시시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원</td> </tr> </tbody> </table> <p>2. ~ 6. (생략)</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p>제명 <u>평창군 군세 조례</u></p> <p>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 -----.</p> <p>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영업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00시시 이하</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00시시 이하</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00시시 초과</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시시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00시시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 6. (현행과 같음)</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u>1,000시시 이하</u>	<u>80원</u>	1,600시시 이하	18원	<u>1,600시시 이하</u>	<u>140원</u>	2,000시시 이하	19원	<u>1,600시시 초과</u>	<u>200원</u>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u>1,000시시 이하</u>	<u>80원</u>																																																						
1,600시시 이하	18원	<u>1,600시시 이하</u>	<u>140원</u>																																																						
2,000시시 이하	19원	<u>1,600시시 초과</u>	<u>200원</u>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24조제1호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율 조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현 행(제127조제1항제1호)			개 정	
800cc이하	80원	⇒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에 맞추어 세율이 인하(협정 발효 일 부터 시행) 되므로 군세 감소

나. 추계 결과

- 조례 적용 시 매년 135,000천원씩 4년간 540,000천원의 자동차세 감소예정(감소대상 자동차 4,900대)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 상 진
연락처	(033) 330 -22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계
세 입	△135,000	△135,000	△135,000	△135,000	△540,000
자동차세	△135,000	△135,000	△135,000	△135,000	△540,000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련법령

### <지방세법 >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